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48

발의연월일: 2021. 2. 17.

발 의 자:윤재갑·김승남·문진석

민홍철・설 훈・신정훈

위성곤 • 이개호 • 최강욱

홍문표 • 홍성국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·임·어업의 생산비 경감을 위하여 농·임·어업용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.

해당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나,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농어촌 인구의 감소·고령화,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 기 침체 등으로 인해 농어민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을 위한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농민, 임업 종사자 및 어민이 농·임·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 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06조의2). 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 6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행 개 아 제106조의2(농업·임업·어업용 제106조의2(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등) ① -----나에 해당하는 석유류(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| 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면세유"라 한다)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 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, 교통・에너지・환경세,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 세(이하 이 조에서 "자동차세" 라 한다)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. 이 경 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 -----2026년 12월 31 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 고, 제2호는 2022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 다. 1. • 2. (생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② (생 략) ② ~ ② (현행과 같음)